

수신: 이 상훈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00가소42745 부당이득금

원 고 전동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2 합정연립 비(B)동 1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 고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대표자 주지 종고(속명 : 윤용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변론종결 200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에 현출된 각 영상, 증인 안진걸, 이정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불상 등 종교신앙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경내지·동산·부동산을 포함한다)로 지정되어 그 등록을 마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일대의 토지 11,588.356m² 및 그 중 위 방광리 70 지상에 위치한 '천은사 본사'를 비롯하여 같은 리 71 지상의 '천은사 방장선원', 같은 리 13 지상의 '삼일암', 같은 리 69, 69-2 지상의 '도계암', 같은 리 산 1-30 내지 1-32 지상의 '수도암', '상선암' 등의 부속 건조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건조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의 경내지(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고, 지리산 횡단도로인 861번 지방도가 위 경내지를 관통하여 시암재, 성암재, 궁궐터, 반선 등을 거쳐 내령리 신바위 방면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빠져나가도록 개설되어 있는데, 위 지방도의 양 옆으로 천은사 본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 소유의 건조물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그 경내지내에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가 소재하고 있는 위 방광리 일대는 '지리산 국립공원'(이하 '국립공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피고의 경내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피고와 위 관리공단은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매표소에서 위 지방도를 이용하여 국립공원으로 입장하는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1인당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과 피고 소유의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마. 위 매표소를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위 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문화재 관람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는 없고, 입장료와 관람료 합계 2,000원을 납부하여야만 위 매표소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일단 위 국립공원 안으로 입장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다.

바. 원고는 2000. 4. 30. 위 매표소에서 위 국립공원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각 1,000원 합계 2,000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국립공원에 입장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피고와 위 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입장객이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여 문화적 이익을 향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 입장객으로 하여금 사실상 문화재 관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861번 지방도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로를 거쳐 국립공원 지리산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위 매표소를 통하여 국립공원에 입장한 것이지 위 국립공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그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매표소에서 원고로부터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우선 통합 징수의 부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과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문화재 관람료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통합 징수의 부당성에 관하여

문화재 관람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26조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인 위 관리공단이 그 입장객으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징수 근거 법령이 상이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과 문화재 관람의 기회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각 징수 주체가 개별적으로 징수할 것인지 통합하여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징수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다만 통합 징수의 경우에 위 관리공단이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피고와 같은 사인(私人)의 이익을 위하여 그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위 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

이 있으나, 이와 같은 징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관람료 징수 자체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유물 중에는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불탱화' 1폭과 같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찰 건조물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이나 '천은사 극락보전' 1동과 같은 부동산 외에 '천은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일원이라 함은 '천은사 본사' 외에 '천은사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의 경내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련의 부속 건조물을 포괄하여 이를 일체로 파악하는 수량 단위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위 경내지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수종의 문화재에 대하여 피고가 일일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자로부터 관람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새로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고 그 관람자들의 편익을 감소 시킬 가능성이 큰 점,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피고의 경내지 입구에서 1회의 관람료를 납부함으로써 위 문화재 전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위 경내지로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국립공원 입장만을 원하는지 문화재 관람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서비스 전부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징수권이 유명무색해질 가능성이 큰 점(실제로 두 가지 서비스를 전부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장료와 관람료 중 하나만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위 방광리 일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려한 풍경과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피고 소유의 문화재가 어우러져 그 입장객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 심신의 단련, 문화체험의 기회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위 관리공단이 서로 협의하여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국립공원 입장 및 문화재 관람의 기회를 하나의 서비스 단위로 묶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가사 위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연계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방법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립공원 입장여부와 관계 없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위 관람료 징수가 그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

(1)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책정한 일정액의 관람료를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이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도 준용되고(같은 법 제58조 제2항),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광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소유자이고, 그 문화재를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관람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그리고, 관람료 징수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관람료 징수권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행위 이전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그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장소적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관람자'라 함은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에 '주관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문화재 관람행위를 행하

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관람료 징수 절차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관람자 여부는 문화재가 공개되고 있는 장소에 임한 자가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장소적 접근 기회의 부여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관람료 납부 후에 실제로 관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부당이득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위 관리공단은 국립공원구역이자 피고 소유의 문화재가 공개되고 있는 경내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입장료 및 관람료를 납부하면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 외에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 또는 위 관리공단 소속 직원에게 위 입장료 및 관람료를 납부하고 위 매표소를 통하여 피고의 경내지 안으로 입장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외부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내심의 의사 또는 실제적인 관람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관람자로 볼 수 있고,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대가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위 관람료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2.

판사 신종열 _____

문화재 목록

1. 문화재명 :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종목 : 보물

지정번호 : 0924-00-00-00

분류 : 불화

수량 : 1폭

지정일 : 1987. 7. 16.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소유자 : 천은사

관리자 : 천은사

2. 문화재명 : 천은사 나옹화상원불

종목 : 시 · 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0029-00-00-36

분류 : 조각류

수량 : 1구

지정일 : 1972. 1. 29.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소유자 : 천은사

관리자 : 천은사

3. 문화재명 : 천은사 극락보전

종목 : 시 · 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 0050-00-00-36

분류 : 사찰건축

수량 : 1동

지정일 : 1974. 9. 24.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소유자 : 천은사

관리자 : 천은사

4. 문화재명 : 천은사

종목 :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 0035-00-00-36

분류 : 사찰건축

수량 : 일원

지정일 : 1984. 2. 29.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소유자 : 천은사

관리자 : 천은사. 끝.

정본입니다.

200

2001. 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정종

